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79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장겸 · 송언석 · 강대식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권영진 · 김 건 · 김기웅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신동욱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현승 · 임이자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한기호 · 한지아 의원
(10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 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7(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접속정보”라 한다)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
2.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
3.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접속정보가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접속정보 확인의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절차·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8 및 제4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4의6. 제44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접속정보가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7. 제44조의2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27(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접속정보”라 한다)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u> <u>2.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u> <u>3.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접속정보확인</u>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접속정보가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비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신설>

<신설>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접속정보확인업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우회접속 탐지의 오류나 실패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절차·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4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접속정보가 자신의 정보

<u><신 설></u>	<u>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u> <u>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u>
<u>4의5. · 4의6. (생 략)</u>	<u>4의7. 제44조의27제4항에 따른</u> <u>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u> <u>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u>
5. ~ 25. (생 략)	<u>4의8. · 4의9. (현행 제4호의5</u> 및 제4호의6와 같음)
④ (생 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